

붙임 4 | **이전지역인재 채용목표제 세부사항**

- 추진근거 :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
- 대상 : 광주광역시, 전남지역에 소재한 지방대학 및 고등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자(대학원 이상 제외)
 - 졸업예정자는 재학 중인 학교의 학칙에 따라 졸업예정자로 인정되어 지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졸업예정증명서를 발급·제출할 수 있는 자 (학교 측에 반드시 사전 확인)

<이전지역인재 채용목표제 운영지침>

이전지역인재 : 공공기관이 이전한 지역의 광역시·도, 특별자치시, 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지방대학 및 고등학교(이하 "이전지역 학교"라 함)를 최종적으로 졸업하였거나, 졸업예정인 사람

※ 대학졸업예정자는 4년(=8학기, 전문대학의 경우 2년=4학기)이상 등록하고, 최종 학기 수강신청학점을 포함해서 졸업학점에 도달된 자로서, 재학 중인 학교의 학칙에 따라 졸업예정자로 인정되어 서류접수 마감일 기준 졸업예정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야 하고, 이전공공기관에서 요구하는 시점에 제출 할 수 있어야 함

- 분야 : 연간 채용(예정)인원이 5명을 초과하는 분야
- 단계 : 전형별 합격자 결정 시
- 방법 : 해당 채용분야 및 채용전형별 합격인원 중 이전지역인재 합격인원 비율이 30%에 미달할 경우, 「합격선 -5점(가점 포함)」 이내에서 이전지역인재 불합격자 중 고득점순으로, 목표 미달 인원만큼 당초 합격 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처리(단, 과락자는 제외)
 - 추가합격 대상자가 동점자일 경우 전형별 동점자 처리기준을 따름
 - 단, 적격자에 한하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음